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4. 23.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이선주 의원 등 5명(박정환, 황국주, 고명욱, 도하석)
- 발의일자: 2025. 4. 9.(수)
- 회부일자: 2025. 4. 9.(수)
- 상정 및 의결: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 4. 23.)

2. 제안이유

-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도시 열섬현상 완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안 제3조 ~ 제5조)
- 옥상녹화 식재기준, 협약의 체결·취소 등(안 제6조 ~ 제8조)
- 옥상녹화 지원, 보조금의 반환, 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안 제9조 ~ 제11조)
- 유지·관리, 시설점검, 준용(안 제12조 ~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제16조

○ 비용추계: 대상

○ 입법예고(2025. 4. 9.~4. 20.):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김병욱)

-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열섬 현상 완화,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선정, 식재기준, 협약의 체결·취소, 지원, 관리자의 의무, 시설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 시설물에 대한 5년간의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약: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